

2020. 12. 10.(목) 10:00

제28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1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계상 하고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 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임.

4. 예산총괄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1,011,300	1,004,600	6,700
일 반 회 계		1,002,100	995,400	6,700
특 별 회 계		9,200	9,200	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833	2,833	0
	의료급여기금	768	770	△2
	기반시설	118	118	0
	치수사업	5,480	5,478	2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11,300	1,004,600	6,700	0.67
일반회계	계	1,002,100	995,400	6,700	0.67
	지방세수입	195,376	194,676	700	0.36
	세외수입	37,596	36,818	778	2.11
	경상적세외수입	24,857	24,793	34	0.14
	임시적세외수입	12,770	12,025	744	6.19
	지방교부세	139,862	139,862	0	0
	조정교부금등	28,184	27,434	750	2.73
	보조금	474,324	470,232	4,091	0.87
	국고보조금등	340,025	335,558	4,466	1.33
	시·도비보조금등	134,299	134,674	△375	△0.2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6,758	126,377	381	0.30
특별회계		9,200	9,200	0	0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11,300	1,004,600	6,700	0.67
일반회계	계	1,002,100	995,400	6,700	0.67
	일반공공행정	139,541	141,629	△2,087	△1.47
	공공질서및안전	5,106	5,162	△56	△1.08
	교육	9,377	10,090	△713	△7.06
	문화및관광	35,316	36,855	△1,538	△4.17
	환경보호	23,040	24,195	△1,155	△4.77
	사회복지	350,542	354,118	△3,576	△1.01
	보건	26,948	29,548	△2,600	△8.80
	농림해양수산	48,938	46,713	2,225	4.76
	산업·중소기업	19,072	19,237	△166	△0.86
	교통및물류	128,914	131,556	△2,643	△2.01
	국토및지역개발	66,272	68,850	△289	△3.35
	예비비	3,317	7,250	△4,212	△55.94
	기타	145,716	120,196	25,520	21.23
특별회계		9,200	9,200	0	0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11,300	1,004,600	6,700	0.67
일 반 회 계	계	1,002,100	995,400	6,700	0.67
	인건비	94,994	96,794	△1,800	△1.86
	물건비	41,974	44,254	△2,281	△5.15
	경상이전	552,591	558,760	△6,169	△1.10
	자본지출	251,140	257,140	△6,001	△2.33
	시설비및부대비	227,478	232,924	△5,446	△2.34
	민간자본이전	10,482	10,436	46	0.44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270	4,323	△52	△1.2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962	1,019	△57	△5.56
	자산취득비	7,946	8,439	△492	△5.83
	융자및출자	0	0	0	0
	내부거래	48,664	21,664	27,000	124.63
	예비비및기타	12,738	16,788	△4,050	△24.13
	예비비	3,317	7,530	△4,212	△55.94
	반환금기타	9,421	9,258	162	1.75
특 별 회 계		9,200	9,200	0	0

4)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3회 추경	조정액 (증감)	비고
기획예산실	군정홍보물 인쇄	40	20	△20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경영지원팀)	14,080	12,227	△1,853	
기획예산실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20	10	△10	
기획예산실	기관공통 국내여비	90	20	△70	
기획예산실	예비비	6,314	2,101	△4,212	
기획예산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20,000	47,000	27,000	
자치행정과	각종 기 구입	43	25	△18	
자치행정과	—읍·면·직속기관 계양용 기	18		△18	
자치행정과	긴급재난지원금(예산성립전 사용)	69,823	71,154	1,331	보조
자치행정과	공무국외출장 지원	20		△20	
자치행정과	서프라이즈 달성 운영	10		△10	
자치행정과	이장자녀 장학금(고등학생)	10		△10	
자치행정과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	10		△10	
자치행정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자체)		15	15	
정보통신과	일반전화	186	137	△49	
정보통신과	—통화료	186	137	△49	
정보통신과	시설장비유지비	192	89	△103	
정보통신과	—통합배선망설비	61		△61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장비	7		△7	
정보통신과	—공청설비	3		△3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3회 추경	조정액 (증감)	비고
정보통신과	—방송설비	37	4	△32	
정보통신과	교환기 업그레이드 및 콜서버 교체, 컬러링서버 구축	188	157	△30	
정보통신과	공공요금 및 제세	1,075	782	△293	
정보통신과	—CCTV 전용회선(10M)	864	620	△244	
정보통신과	—CCTV 전기사용료	173	124	△49	
정보통신과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013	959	△54	
정보통신과	—기본급	728	689	△39	보조
정보통신과	—연차수당	36	34	△2	
정보통신과	—정액급식비	58	55	△3	
정보통신과	—야간근무수당	111	105	△6	
정보통신과	—휴일근로수당	44	42	△2	
정보통신과	—명절상여금	36	34	△2	
일자리경제과	모범근로자 해외 산업연수	38		△38	
일자리경제과	근로자의 날 노사 화합잔치 지원	40		△40	보조
일자리경제과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40		△40	보조
일자리경제과	외국인노동자 화합 한마당	10		△10	
일자리경제과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관련 토지 매입	700	630	△70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82	58	△124	보조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20	30	10	보조
일자리경제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20	4	△16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	60		△60	
일자리경제과	달성 혁신성장 포럼	80		△8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3회 추경	조정액 (증감)	비고
일자리경제과	구지농공단지 인도 정비공사	400	310	△90	
일자리경제과	농공단지 환경정비 유지보수	50	25	△25	
환경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117	83	△34	보조
환경과	석면피해보상	100	9	△91	보조
환경과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재정지원	40	23	△17	
환경과	간이화장실 설치	145	118	△27	보조
농업정책과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보전	178	124	△54	
농업정책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125	80	△45	보조
농업정책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91	428	△263	보조
농업정책과	보리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사업	120	101	△19	
농업정책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	2,011		△2,011	보조
농업정책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전산관리	11		△11	보조
농업정책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및 행정관리	13		△13	보조
농업정책과	밭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	300		△300	보조
농업정책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보상금	28		△28	보조
농업정책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쌀생산조정제)사업	187	29	△158	보조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금(예산성립전 사용)		5,810	5,810	보조
농업정책과	선택형 공익직불금(논이모작)(예산성립전 사용)		90	90	보조
농업정책과	벼 병충해 방제 농약대 지원	324	244	△80	
농업정책과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35	21	△14	
농업정책과	시설원에 친환경비료 지원	120	101	△19	
농업정책과	시설원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156	128	△28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3회 추경	조정액 (증감)	비고
농업정책과	민속소싸움대회 지원	160		△ 160	보조
농업정책과	FTA피해보전직불 지원		52	52	보조
농업정책과	가축살처분 보상금지원	95	51	△44	보조
청소위생과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대행 수수료	4,476	4,456	△20	
청소위생과	쓰레기 최종처리비(매립장, 소각장)	727	677	△50	
청소위생과	생활쓰레기 수거차량(군,다사)	412	372	△40	보조
청소위생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대행 수수료	2,872	2,422	△450	
청소위생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2,015	1,665	△350	
청소위생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공공처리장)	254	234	△20	
청소위생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기(RFID)기반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비	58	38	△20	
공원녹지과	툴립 전시회	109	94	△ 15	
공원녹지과	－회원 사문진주막촌	40	35	△5	
공원녹지과	－옥연지 송해공원	70	60	△ 10	
공원녹지과	옥연지 송해공원 긴급 보수	200	120	△80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회원동산 전망대 매점 및 카페) 경상 전출금	59	38	△21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비슬산휴양림) 경상전출금	467	296	△ 172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회원휴양림) 경상 전출금	321	236	△84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치유의숲) 경상 전출금	137	74	△63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명곡체육공원) 경상 전출금	103	78	△26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테크노폴리스) 경상전출금	23	8	△ 15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옥연지 해공원 매점) 경상 전출금	143	116	△27	
공원녹지과	삼산리 토석채취장 복구	40	22	△ 18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3회 추경	조정액 (증감)	비고
공원녹지과	보호수 및 유전자원보호구역 정비	130	116	△ 14	
공원녹지과	참꽃군락지 정비	99	89	△ 10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90	320	△469	
공원녹지과	－비슬산 전기차	410	165	△245	
공원녹지과	－비슬산 숲속캠핑장	379	155	△224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41	6	△36	
공원녹지과	－비슬산 숲속캠핑장	41	6	△36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7	6	△21	
복지정책과	현충일행사 참석자 보상	26	8	△ 18	
복지정책과	현충 시설물 유지보수	40	20	△20	
복지정책과	무궁수훈자회 공적비 설치 공사	130	112	△ 18	
복지정책과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망자장례비(정액)	250	120	△ 130	보조
복지정책과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망자 장례비용(실비)	75	36	△39	보조
복지정책과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90	70	△20	
복지정책과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600	305	△295	
복지정책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1,337	1,277	△60	보조
복지정책과	경로당 임차료 지원	48	22	△26	
복지정책과	시 경로체육대회 참가 지원	19		△ 19	
복지정책과	실버 한마음 큰잔치 대회(노인의 날 기념)	89	2	△87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관 환경정비	206	180	△26	
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1,507	1,559	52	보조
복지정책과	시설관리공단(여성문화복지센터) 경상전출금	1,974	1,037	△937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3회 추경	조정액 (증감)	비고
복지정책과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799	932	133	보조
복지정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980	13,788	△ 192	보조
복지정책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836	721	△ 115	보조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종사자 하계연수	14		△ 14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26	101	△ 25	
복지정책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480	360	△ 120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군비사업)	110	60	△ 50	
복지정책과	장난감도서관 운영비(7개소)	850	800	△ 50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700	552	△ 148	
복지정책과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5년)	132	101	△ 31	
복지정책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423	1,640	217	보조
복지정책과	농어촌지역 보육교직원 교통비 지원	522	438	△ 84	
복지정책과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국공립, 법인)	30	13	△ 18	
복지정책과	신규 장기임차 어린이집 지원		220	220	보조
복지정책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44	44	
복지정책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66	66	
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4,397	23,567	△ 830	보조
생활보장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예산성립전 사용)		1,691	1,691	보조
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410	320	△ 90	보조
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지역자활센터)	2,271	2,127	△ 144	보조
생활보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	129	119	△ 10	보조
생활보장과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청년저축계좌사업)	57	89	33	보조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3회 추경	조정액 (증감)	비고
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0,049	9,173	△877	보조
희망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11,131	10,631	△500	보조
희망지원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303	1,317	△1,986	보조
희망지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보조 (예산성립전 사용)	474	489	15	보조
희망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2,494	2,513	19	보조
희망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시비추가지원	86	66	(20)	보조
희망지원과	장애수당(기초)지급(예산성립전 사용)	502	534	32	보조
희망지원과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224	204	(20)	보조
희망지원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예산성립전 사용)	260	333	73	보조
희망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예산성립전 사용)	9,463	10,111	647	보조
희망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833	863	30	보조
희망지원과	아동수당지원	24,183	24,646	464	보조
희망지원과	상담실 공간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예산성립전 사용)		20	20	보조
희망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2,026	2,059	34	보조
희망지원과	아동급식(학기중 중식)지원	620	820	200	보조
교통과	생활권이면도로 정비	50	20	△30	
교통과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0,500	10,000	△500	
교통과	논공읍 노이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600	460	△140	
교통과	하빈면 하산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300	265	△35	
건설과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장기미집행 보상	300	100	△200	
건설과	화원 본리4리(46-10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109	144	35	
건설과	화원 본리리(인흥서원 옆)도시계획도로 개설	50	35	△15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3회 추경	조정액 (증감)	비고
건설과	다사 박곡리 마을 주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250	200	△50	
건설과	다사 세천리(세천마을회관옆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376	196	△180	
건설과	다사 박곡리 농산물집하장 동북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80	44	△36	
건설과	현풍 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80	160	80	
건설과	설해대책용 친환경 제설제 및 모래	300	50	△250	
건설과	제설전진기지(창고) 설치	978	798	△180	
건설과	화원 천내리 671-12번지선 외 1개소 도로정비	50	11	△39	
건설과	화원 대구교도소 앞 ~ 화원교 지중화사업	1,000		△1,000	
안전방재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00	186	86	보조
안전방재과	천내천 유지용수 펌프장 전기사용료	204	144	△60	
안전방재과	현풍천 재해예방사업(특별조정교부금)	1,000	1,192	192	조정 교부금
안전방재과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192		△192	
안전방재과	하천수문관리	59	25	△34	
안전방재과	하천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보상비	350	170	△180	
안전방재과	생태탐방로 운영 및 유지관리	40	30	△10	
도시과	금포지구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340	340	
도시과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정비	50		△50	
도시과	-신규 설치 및 교체	43		△43	
도시과	-이설 및 철거	8		△8	
도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	3,513	2,713	△800	보조
도시과	눈꽃(설화)처럼 밝은 설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148	148		보조
도시과	설화1리 마을회관 방송장비 및 회의장비 개선	22	22		보조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3회 추경	조정액 (증감)	비고
도시정비과	현풍읍 신기리 국가산단북로100길 하수관거 정비	210	152	△58	
도시정비과	논공 위천리(409-1번지선) 농로정비	350	268	△82	
도시정비과	옥포 본리리 농로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120	74	△46	
도시정비과	가창 우록2리(819번지선) 농로개설	342	331	△11	
도시정비과	구지 평촌리(803-4번지선) 농로포장	100	61	△39	
도시정비과	구지 수리리(474번지선)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30	15	△15	
도시정비과	유가읍 초곡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	50	30	△20	
도시정비과	다사읍 이현고개삼거리 ~ 하빈면 일원 가로등 설치 및 가로등기구 교체	200	181	△19	
도시정비과	설화명곡역 ~ 천내초등학교 가로등기구 교체 및 인도등 설치	180	150	△30	
도시정비과	옥포 교항천 산책로 주변 보안등 설치	140	115	△25	
도시정비과	양수기 임차료	25	5	△20	
도시정비과	양수장 및 암반관정 전기요금	107	57	△50	
도시정비과	노후 농업용 양수장 시설개선	150	130	△20	
도시정비과	암반관정 유지관리	150	95	△55	
도시정비과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117	103	△14	
건축과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103	53	△51	보조
정책사업과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923	665	△258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달성문화센터) 경상 전출금	1,611	858	△753	
문화체육과	군수기타기 생활체육대회(25종)	120		△120	
문화체육과	2020 축구 스토브리그	60	50	△10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경상 전출금	694	409	△285	
문화체육과	공공체육시설 경상전출금	568	492	△76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3회 추경	조정액 (증감)	비고
문화체육과	기타체육시설 경상전출금	231	182	△49	
문화체육과	군민체육관 경상전출금	266	189	△77	
문화체육과	달성 테크노 스포츠 센터 건립	1,000	1,700	700	보조
문화체육과	달성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조성(설계)		22	22	
관광과	마비정 벽화마을 주차장 조성	92		△92	
관광과	관광지 방역 및 관리(예산성립전 사용)		22	22	보조
관광과	사문진 역사공원 시설물관리	100	53	△47	
관광과	시설관리공단(레포츠밸리)경상 전출금	300	246	△54	
교육청소년과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350	272	△78	
교육청소년과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106		△106	보조
교육청소년과	달성군 사이버 화상영어 학습센터운영	180	124	△56	
교육청소년과	달성군립도서관 주차장 확장	130		△130	
교육청소년과	달성문화유적 답사 체험프로그램 지원	90	54	△36	
교육청소년과	우수 식재료비 지원	700	659	△41	보조
교육청소년과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개인)	45	25	△20	
교육청소년과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학교)	705	555	△150	
보건과	선택예방접종비	300		△300	
보건과	—로타바이러스접종비	280		△280	
보건과	—대상포진접종비	20		△20	
보건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예산성립전 사용)		169	169	보조
보건과	달성군보건소 이전,신축 건축공사비	4,715	2,774	△1,941	
건강증진과	기저귀 지원 및 조제분유 지원	391	530	139	보조
건강증진과	치매친화 환경 조성	14	167	153	보조
다사읍	청사 계단 논슬립 설치 공사		7	7	

5.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46억원 보다 67억원(증 0.67%)이 증가된 1조113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954억원 보다 67억원이 증액된 1조21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지방세인 자동차세 7억원,
세외수입 7억7천만원, 조정교부금 7억5천만원,
국·시비보조금 41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 8천만원 등
총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등 총 250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
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투자사업으로는 현풍 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8천만원 등
4억 7천만원을 반영하고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17억원 등
보조사업으로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정리와 집행 잔액을 반영하고, 인건비나
법정경비의 부족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총 예산 1,604억 5천만원 중

938억8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난해 이월액 1,203억2천만원 대비 큰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도 당초예산 편성시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연도 내 집행가능액만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1월 25일

2. 제 출 자 : 하중환 의원, 김은영 의원

3. 제안사유

-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지원의 원칙(안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 기준, 신청 및 지급, 중지, 환수조치(안 제4조 ~ 제9조)
- 지도·감독, 준용(안 제10조 ~ 제11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3조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의 원칙
- 안 제4조 ~ 제9조 지원대상, 기준, 신청및지급, 중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 제11조 지도·감독, 준용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달성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만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 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달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 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그를 검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지도 및 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달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달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달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달 성 군 수 귀 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달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1월 25일

2. 제 출 자 : 하중환 의원, 김은영 의원

3. 제안사유

-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책무, 실태조사, 안전교육(안 제3조 ~ 제5조)
- 공사현장관리, 협력체계 구축, 교통지도, 차량통제, 지원
(안 제6조 ~ 제10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 도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제5조 실태조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10조 공사현장 관리, 협력체계구축, 교통지도, 차량 통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 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
 - 라.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
3. “통학로”란 제2호에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 등이 수립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하거나, 공사시행자가 공사시방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배치와 관련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기관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1월 25일

2. 제 출 자 : 서도원 의원

3. 제안사유

-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힘쓰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책무,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 노동권익 사업(안 제3조 ~ 제6조)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노동인권 상담 및 지원체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안 제7조 ~ 제9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 근로기준법 제64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힘쓰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제6조 책무,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 노동권익 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제9조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노동인권 상담 및 지원 체계,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달성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달성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청소년 노동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달성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소년 노동자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청소년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 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 노동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소년 노동권의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2. 청소년 노동권의 보호 교육 및 강사 양성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대한 청소년 노동권의 보호 준수 교육
4. 청소년 노동권의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
5. 청소년 안전 일자리 육성 및 창출
6. 청소년 안전 노동권의 지킴이 운영
7. 청소년 경제활동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 노동청, 사용자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청소년 단체, 청소년 노동교육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진로담당교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 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1월 25일
2. 제 출 자 : 서도원 의원 등 10인
3. 제안사유

-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 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등에 관한 목적의 명확화(안 제1조)
- 업무추진비 종류 세부화 및 회계관계공무원 정의 신설(안 제2조)
-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기준 안 세부화(안 제3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등에 관한 목적의 명확화
- 안 제2조 업무추진비 종류 세부화 및 회계관계공무원 정의 신설
- 안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기준 안 세부화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달성군의회
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
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
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달성군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등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기준)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u>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u> <u>1.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 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u> <u>2.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일시,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이 나타나는 지출품의서 또는 집행내역서를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u> <u>3. 접대성 경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그 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취지와 그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된 집행내역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성명 및 소속 또는 주소를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u>	<u><삭 제></u>
---	---------------------------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1월 25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도일용 의원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증대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소관 의안과 청원등을 전문분야별로 신속하게 심사 처리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상임위원의 임기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20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2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증대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전문분야별로 신속하게 심사, 처리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7조 상임위원의 임기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 안 제14조 ~ 제20조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현재 대구광역시 내 8개 기초자치단체 중 우리군을 제외한 7개 구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며 의원수가 비슷한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바, 상임위원회 설치의 타당성은 충분하나 그 시기의 적절성과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은 의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종류) 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정책행정위원회 4명
3. 복지건설위원회 5명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정책행정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법무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정책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읍·면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문화재산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건설위원회

가.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다만, 정책행정위원회 또는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할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

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장 윤리특별위원회

제14조(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의 선임 등은 제9조를, 부위원장의 선임 등은 제12조를 각각 준용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③ 윤리특위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사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특위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16조(심문) 윤리특위는 심사요구의원 및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되는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고, 이 경우 윤리특위 개최일 전 3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해당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7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발언 또는 변명을 하도록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윤리특위에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통고) 윤리특위의 의결에 대한 통지는 그 심사대상이 된 사실과 의결내용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원에게 윤리특위의 의결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결 내용을 구술한 후 그 서면을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제척과 회피) ① 윤리특위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사 안건에 관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윤리특위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윤리심사 · 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출석대상 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석요구 사유	※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2호 서식】

□ 심사요구 등 의원발언신청서
□ 심사대상 등 의원해명신청서

신 청 서

(※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심사대상 의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 청 의 원	구	분	☐ 심사요구의원 ☐ 심사대상의원 ☐ 심사대상을 변호하는 의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발언(해명) 주요 요지	※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자치법 제62조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1월 25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도일용 의원

3. 제안사유

-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65조의2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7조 지원,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가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군수는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그 차별 여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나 경비노동자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나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나 심리검사 결과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경비노동자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군수는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지원
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서비스 연계 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경비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노동 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지원
5.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7조(교육, 홍보 등) ① 군수는 경비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 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비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노동인권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군수는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
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1월 25일

2. 제 출 자 : 신동윤 의원, 김은영 의원

3. 제안사유

-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센터의 설치·운영, 이용대상, 사업(안 제4조 ~ 제6조)
- 비용지원, 비용 환수, 지도·점검(안 제7조 ~ 제9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6조 센터의 설치·운영, 이용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제9조 비용지원, 환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② 군수는 센터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을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센터는 군수가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 이용대상은 돌봄 또는 보호가 필요한 달성군에 거주

하는 모든 아동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5. 조손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의 아동
7.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8.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7.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센터가 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2. 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 사업비
3.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라 센터가 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비용의 환수) ① 제7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 등에 따라 지원 비용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비용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비용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외 사업비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제9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지도·점검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1월 25일

2. 제 출 자 : 신동윤 의원

3. 제안사유

- 생태계의 유지 보전과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계획 수립, 교육·훈련, 사업추진 등(안 제4 ~ 제6조)
- 비용의 지원, 밀원식물의 조성(안 제7조 ~ 제8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 안 제4조 ~ 제6조 지원계획 수립, 교육·훈련, 사업추진 등
- 안 제7조 ~ 제8조 비용의 지원, 밀원식물의 조성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달성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
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기자재·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
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6.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1월 25일

2. 제 출 자 : 김은영 의원

3. 제안사유

-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달성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보조금의 지원,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제22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달성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5조 보조금의 지원, 표창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성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성군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적십자사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적십자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2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2021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주요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주민 생활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최근 공동주택 입주 및 산업단지 조성 완료로 차량 등록 대수가 증가 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및 이륜자동차 무단방치에 따른 특별 사법경찰관 업무가 급증하여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하고자 전담팀으로 변경을 주요 목적으로 함.
- 팀장의 대외 공식적 명칭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함으로 관련 조례 개정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2021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주요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주민 생활만족도를 높이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최근 공동주택 입주 및 산업단지 조성 완료로 차량 등록 대수가 증가 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및 이륜자동차 무단방치에 따른 특별 사범경찰관 업무가 급증하여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담팀으로 변경을 주요 목적으로 함.
- 팀장의 대외 공식적 명칭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함으로 관련 조례 개정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주민복지국)제2항제3호 중 “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아동”을 “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아동보호”로 하고 제2항제7호 중 “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을 “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교통특사경”으로 한다.

제8조(건설도시국)제2항제7호 중 “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정보·도로명주소”를 “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정보·주소정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제4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한다.
-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간사)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고 제10조(제안설명)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한다.

- ④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제7항 중 “예산담당” 을 “예산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⑤ 대구광역시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제2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직무)제3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제3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간사) 중 “기획담당” 을 “기획팀장” 으로 변경하고 제8조(분과 위원회)제3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구성 및 운영)제2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간사)제2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제10호, 제1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 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제10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3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⑮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제6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⑯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제3항 중 “식품위생담당” 을 “식품위생담당 팀장” 으로 변경하고 제5조(위원회 구성)제6항 중 “위생행정담당” 을 “위생행정담당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제3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⑱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구성)제4항 중 “업무담당” 을 “업무담당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⑲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제3항 중 “담당업무 부서장 또는 담당” 을 “담당업무 부서장 또는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⑳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제1항제2호 중 “재난업무담당” 을 “재난업무담당 팀장” 으로 변경한다.

- ㉑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제1항제2조 중 “옥외광고담당” 을 “옥외광고담당 팀장” 으로 변경한다.

- ㉒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제3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하고 제5조(운영위원회) 제6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②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제1항제2호 중 “체육진흥담당” 을 “체육진흥담당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②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②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구성 등)제3항 중 “업무담당” 을 “업무담당 팀장” 으로 변경한다.

- ②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제3항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별표]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사무직원중 별정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임용권 나. 호봉획정 및 승급 다.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1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법 제7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같은법 제32조
	2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읍 · 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나. 당직명령 다. 출장승인 라. 겸직근무 마. 병 가 바. 공 가 사. 특별휴가 아. 겸직허가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27조
	2	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의 권한 가. 대부대상자 추천 나. 자금의 회수 다. 사업지도 감독	•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3	읍면개발자문위원 위촉	•군읍 · 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
징 수 과	1	지방세징수법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2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가. 이륜차 등록에 관한 취득세, 등록면허 세 신고접수 및 고지서 발급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30조
회 계 과	1	물품관리조례중 다음사항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처분	•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 •같은조례 제17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과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청소위생과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환경미화원 관리 나.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지도 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라. 생활쓰레기 불법투방기 지도·단속 마.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바. 청소장비 관리 사.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아. 대형폐기물 처리 자. 생활쓰레기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차. 공중용 쓰레기용기 유지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2	쓰레기 봉투의 공급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나. 쓰레기봉투 판매 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및 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공원녹지과	1	산림보호법 중 다음의 권한 가. 입산허가 나. 불놓기 허가 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보호법 제15조 •산림보호법 제34조 •산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7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행위 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복지정책과	1	기초연금법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나.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 라. 수급권 자격관리 마. 이의신청 등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매장·화장·개장의 신고 나.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생활보장과	1	의료급여법중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상실·변경 요구 나.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다. 의료급여증의 자격확인·정정·증회수등 라.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수합 제출 마.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상한금 신청서 수합제출	•의료급여법 제3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2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3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의 권한 가. 수급자의 관리 나. 급여의 신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희망지원과	1	장애인복지법중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진단 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 다.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라. 장애수당등의 지급 신청 마. 장애인 복지카드의 교부 등 바. 장애등급의 조정 사. 장애상태의 확인 아. 등록증의 반환명령 자.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차.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자에 대한 배려 카. 장애인 보장구 신청서 수합 및 실태 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제46조
교 통 과	1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 내지 110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2	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노상방치차량 조사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과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공사, 굴착, 건축수반 허가 제외)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
도 시 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불법형질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안전방재과	1	소하천의 점·사용허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나.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 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가.

나.

2. 비용 발생 요인

3. 관련조문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국 △△과장 △△ 팀장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비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10호 서식]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

[illegible]

※ 조정카드는 1일 1매를 원칙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11호 서식]

무인발급기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

년월일	금일까지 금액 (A)	전일까지 금액 (B)	금일결손 (C)		금일발행 (A-B-C)		결재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담당 자	팀장	과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 심사대상자

연번	표창대상자			공적개요	심사결과
	직위 또는 직명	소속 또는 주소	성 명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제11조(공적심사) 및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에 따라 위 심사결과와 같이 표창대상자로 선정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의원) (인)

위원(의원) (인)

위원(사무국장) (인)

위원(전문위원)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민복지국) ① (생 략)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 략) 3. <u>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 복지·드림스타트·아동</u> 에 관한 사항 7. <u>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u> 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 복지·드림스타트·아동보호</u> ----- 7. <u>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교통특사경</u> -----
제8조(건설도시국) ① (생 략)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7. (생 략) 8. <u>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 정보·도로명주소</u> 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도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7. (현행과 같음) 8. <u>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 정보·주소정보</u> -----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2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행정수요의 다변화 및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담당부서 신설 등으로 기구개편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인력 일부를 증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안 별표)
 - 총 정원 : 963명 → 986명(증 23)
 - 집행기관 정원 : 949명 → 972명(증 23)
 - ※ 의회 정원 변동 없음(14명)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30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행정수요의 다변화 및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담당부서 신설 등으로 기구개편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인력 일부를 증원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안 별표)
 - 총 정원 : 963명 → 986명(증 23)
 - 집행기관 정원 : 949명 → 972명(증 23)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63” 을 “986”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949” 을 “972” 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u>963</u> 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949</u> 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 <u>986</u> ----- ----- 1. ----- : <u>972</u> -

【 별표 3 】 (개정 2021. 01. 0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963986	611630	14	107109	176178	55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934957	606625	14	8385	176178	55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344	2728	2	4	7	3
6급이하 계	882904	573591	11	7880	168170	52
연구직 계	3	3				
연 구 관						
연 구 사	3	3				
지도직 계	24			24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2			22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	1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2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민법 제77조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39조(해산) 규정에 따라 2019. 12. 18. 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19. 12. 31.자 재단 사무가 종료되었고, 2020. 1. 1. 청산 개시로 2020. 6. 25. 청산 종결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함.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 제77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 민법 제77조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39조(해산) 규정에 따라 2019. 12. 18. 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19. 12. 31.자 재단 사무가 종료되었고, 2020. 1. 1. 청산 개시로 2020. 6. 25. 청산 종결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함.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2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여 군민이 조례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
-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신속·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어려운 한자어 정비
 - 양양 → 드높임 / 통리 → 총괄 / 여타 → 그밖의 / 내경 → 안지름 /
미연에 → 사전에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여 군민이 조례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
-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신속·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어려운 한자어 정비
- 양양 → 드높임/통리 → 총괄/여타 → 그밖의/내경 → 안지름/미연에 → 사전에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 및 한자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조례를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자어 등 정비)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 및 한자어를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자어 등 정비

연번	소관부서	자 치 법 규 명	관련조항	현 행	개 정
1	자치행정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제5조제3호	순화양양	순화나 드높임
2	자치행정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3	자치행정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	여타	그 밖의
4	자치행정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5	환경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제3호	내경	안지름
6	안전방재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2조제9호	미연에	사전에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2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 이관 등 감면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안 부칙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에 위임한 규정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함에 따라 제3조 삭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안 제15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이관 등 감면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함에 따라 제3조 삭제
- 안 제15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3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7조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3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을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조례 제2526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조례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을 제외한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삭제>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u>2020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 ----- <u>2023년 12월 31일</u> ----- ----- ----- ----- ----- ----- ----- ----- ----- ----- ----- ----- ----- ----- ----- -----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
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
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
영을 하려는 자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
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
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
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
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2023년 12월 31일-----

1. 옥포 농공단지	----- -----
2. 구지 농공단지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 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 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2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선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확대

4.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 변경하고, 공공분야의 용도예외와 민간분야의 사용가능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전체위원의 1/3 이상에서 1/2이상으로 변경(안 제10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선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확대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6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 변경하고, 공공 분야의 용도예외와 민간분야의 사용가능 범위를 명확히 함.
- 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전체 위원의 1/3 이상에서 1/2이상으로 변경
- 안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을 명확히 함.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잡수입”을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 ③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과장과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구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제6조 관련)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가.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 나. 재난 예방·대비·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 라.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 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 요원 인건비
- 바.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 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에 의거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차.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 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융자
- 파.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 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 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계획 상 산사태 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 지역에 위치한 시설
- 라.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달성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u>의한</u> 적립금 2. (생략) 3. 그 밖의 <u>잡수입</u> 등	제2조(기금의 조성)-----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u>따른</u> 적립금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u>기타수입</u> 등
제6조(기금의 용도) <u>기금은 영 제74조와 같으며, 세부용도는 별표와 같다</u>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u>별표와 같다.</u>
제9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u>건설도시국장</u> 2. (생략) ② (생략)	제9조(회계공무원) ① ----- ----- ----- 1. 기금운용관 : <u>재난업무 담당국장</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u>중요</u>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u>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과장, 안전방재과장 및 기금운용과 재난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과장과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사항으로써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 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2020. 1. 행정안전부)

제6장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1.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시급성·불가피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1/2이상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2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노후 건축물의 증가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됨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규정(안 제4조)
- 긴급점검 대상 규정(안 제5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규정(안 제6조)
- 안전진단의 대상 규정(안 제7조)
- 해체공사감리자 교체대상 규정(안 제8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3~제16조, 제31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1조, 제21조, 제23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노후 건축물의 증가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됨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4조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규정
- 안 제5조 긴급점검 대상 규정
- 안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규정
- 안 제7조 안전진단의 대상 규정
- 안 제8조 해체공사감리자 교체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을 만들어 그 곳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으로 인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군수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①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 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② ~ ④ 생략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2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촌주택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였으나,
-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대구광역시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가 존재하며,
- 국민주택사업 시행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으로 정부예산을 농협에서 수행하는 등 특별회계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7조, 제108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주택법 제84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촌주택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 하였으나,
-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대구광역시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가 존재하며,
- 국민주택사업 시행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으로 정부예산을 농협에서 수행하는 등 특별회계 준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사업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적용시한(‘08.2.29.)도래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에 반영(‘09.6.9.)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 「주택법」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참고 2

지자체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폐지 현황

지자체명	조례명	폐지일	비고
부산	본청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2006.12.27.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조례	2018.8.20.
인천	본청	인천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03.6.16.
	옹진군	옹진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11.1.
울산	본청	울산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07.2.7.
광주	본청	광주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11.15.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12.10
경기	성남시	성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9.30.
	수원시	수원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03.2.7.
	부천시	부천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1977.2.28.
	부천시	부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1.11.
	의정부시	의정부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1977.2.28.
	의정부시	의정부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11.11.
	군포시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07.8.1.
	시흥시	시흥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11.14.
	오산시	오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3.18.
	파주시	파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10.16.
	하남시	하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6.8.
	과천시	과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1.19.
	구리시	구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4.12.

지자체명	조례명	폐지일	비고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4.3.	
동두천	동두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5.16.	
평택시	평택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11.8.	
김포시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2.29	
안성시	안성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5.14.	
강원 동해시	동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7.10.	
춘천시	춘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12.30.	
고성군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12.26.	
평창군	평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12.27.	
홍천군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9.28.	
횡성군	횡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10.13.	
충북 영동군	영동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0.26.	
옥천군	옥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0.12	
제천시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7.16.	
진천군	진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12.23.	
청원군	청원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8.28.	
청주시	청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6.15.	
충주시	충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08.6.10.	
단양군	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0.16.	
음성군	음성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9.15.	

지자체명	조 례 명	폐지일	비고
충남 아산시	아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12.15.	
당진군	당진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 1. 1.	
당진시	당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11.15	
예산군	예산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1.16	
태안군	태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 1.12.	
전북 남원시	남원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 9. 6.	
정읍시	정읍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04. 9. 7.	
고창군	고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11.23	
무주군	무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 5.31	
부안군	부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 4.14.	
완주군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 3.14.	
임실군	임실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 2. 8.	
장수군	장수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0.27.	
진안군	진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0.15.	
전남 고흥군	고흥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12.28	
곡성군	곡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 7.19	
광양시	광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11. 1.	

지자체명	조 례 명	폐지일	비고
전남 구례군	구례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2.31.	
보성군	보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 7. 5.	
순천시	순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 3. 6.	
순천시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2018. 7.31.	
강진군	강진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 4.24.	
장성군	장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 9.19.	
해남군	해남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0.28.	
경북 문경시	문경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 7.31.	
상주시	상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12. 4.	
고령군	고령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08.12.26.	
성주군	성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4.9.	
영양군	영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0.8.	
예천군	예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1.26.	
청송군	청송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6.3.	
울진군	울진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2.18.	
경남 사천시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2.26.	

지자체명	조 례 명	폐지일	비고
경 남 진주시	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9.25.	
(구)창원시	창원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12.31.	
고성군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0.28.	
남해군	남해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11.16.	
밀양시	밀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11.15.	
양산시	양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2.31.	
의령군	의령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12.21.	
하동군	하동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8.5.	
함안군	함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7.14.	
거창군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12.18.	
마산시	마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7.1.	
산청군	산청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8.14.	
창원시	진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7.1.	
창원시	창원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12.31.	
함양군	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7.15.	
합천군	합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12.31.	
제 주 특 별 제 주 도	제주도 농어촌주택사업 관리 조례	2009.12.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2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부동산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종 심의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회의의 비공표)를 삭제함.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부동산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종 심의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회의의 비공표)를 삭제함.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 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삭 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5.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④ 법 제27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2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2012년 7월 개정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청소년수련 시설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강습료를 신설 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에 효율성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수련 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요청 등을 감안하여 수련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사용시간을 조정(제7조)
- 강습료를 별표2에 신설(제11조)
 - 야간시간 18:00 ~ 21:00를 18:00 ~ 22:00로 개정
 - 시설 사용료 정비 및 부속설비 사용료 1회 기준 명시
- 제20조(회계 및 결산) 개정
 - 제1항에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 제3항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이내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5조제2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2012년 7월 개정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청소년수련 시설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강습료를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에 효율성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수련 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요청 등을 감안하여 수련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사용시간을 조정(제7조)
- 강습료를 별표2에 신설(제11조)
 - 야간시간 18:00 ~ 21:00를 18:00 ~ 22:00로 개정
 - 시설 사용료 정비 및 부속설비 사용료 1회 기준 명시
- 제20조(회계 및 결산) 개정
 - 제1항에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 제3항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이라 하고,
제2조제3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청소년 수련시설” 을 “수련시설” 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수련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군수는 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요청 등을 감안하여 수련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2. 수련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강습료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제20조제1항 중 “40일” 을 “30일” 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30일” 을 “90일”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요일별 사용시간

○ 월 ~ 금 : 09:00~22:00

○ 토 : 09:00~17:00

※단, 일요일·법정공휴일은 휴관

【별표2】

1. 시설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헬스장	1인/1월	15,000	30,000	
강당	오전	20,000	40,000	마이크 2개 무료 제공
	오후	25,000	50,000	
	야간	30,000	60,000	
체육관	오전	30,000	60,000	
	오후	50,000	100,000	
	야간	70,000	140,000	
인공암벽장	1인/1월	20,000	30,000	1일 2시간
	1인/1일	3,000	6,000	2시간
야외공연장	오전	35,000	50,000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음악연습실	2시간	10,000	20,000	
강의실	오전	15,000	25,000	
	오후	17,000	27,000	
	야간	20,000	30,000	

2. 강습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평생교육강좌	월/1과목	80,000원 이하	재료비 등 강습에 필요한 실비 별도

3. 부속설비 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빔프로젝트	1회	15,000	30,000	
조명(무빙라이트)	1회	20,000	30,000	
냉·난방	강당 1회	40,000	80,000	
	강의실 1회	15,000	30,000	
노트북	1회	15,000	30,000	
음향(추가마이크)	1개당	5,000	10,000	

※위 1회는 제1호(시설사용료)의 각 기준에 따른 기간 내 시설을 사용하면서 부속 설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시간구분

구 분	시 간	비 고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토요일은 운영 안함

※허가된 이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3.“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청소년 수련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10.)	제3조(위치 및 시설) ①수련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7조(사용시간 등) ①수련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가운데 하나와 같다. 다만, 수련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2.7.10.) 1. 매월 둘째주 월요일 2. 신정, 설날, 추석	제7조(사용시간 등) ①수련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군수는 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요청 등을 감안하여 수련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2. 수련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강습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으며, 허가시에는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강습료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제20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다음연도의 수련시설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③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별표1】

1. 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헬스장	1인/1월	15,000	30,000	
강당	오전	20,000	40,000	마이크2개
	오후	25,000	50,000	
	야간	30,000	60,000	
체육관	오전	30,000	60,000	
	오후	50,000	100,000	
	야간	70,000	140,000	
인공암벽장	1인/1월	20,000	30,000	1일 2시간
	1인/1일	3,000	6,000	2시간
야외공연장	오전	35,000	50,000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음악연습실	2시간	10,000	20,000	
강의실	1회	15,000	25,000	

제20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까지 -----

③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1】

□ 요일별 사용시간

○ 월 ~ 금 : 09:00~22:00

○ 토 : 09:00~17:00

※ 단, 일요일·법정공휴일은 휴관

【별표2】

1. 시설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헬스장	1인/1월	15,000	30,000	
강당	오전	20,000	40,000	마이크2개 무료제공
	오후	25,000	50,000	
	야간	30,000	60,000	
체육관	오전	30,000	60,000	
	오후	50,000	100,000	
	야간	70,000	140,000	
인공암벽장	1인/1월	20,000	30,000	1일 2시간
	1인/1일	3,000	6,000	2시간
야외공연장	오전	35,000	50,000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음악연습실	2시간	10,000	20,000	
강의실	오전	15,000	25,000	
	오후	17,000	27,000	
	야간	20,000	30,000	

현행	개정안																																																																																																								
신설 2. 부속설비 사용료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기준</th><th colspan="2">금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청소년</th><th>일반</th></tr><tr><td>빔프로젝트</td><td>1회</td><td>15,000</td><td>30,000</td><td></td></tr><tr><td>조명(무빙라이트)</td><td>1회</td><td>20,000</td><td>30,000</td><td></td></tr><tr><td rowspan="2">냉·난방</td><td>강당 1회</td><td>55,000</td><td>80,000</td><td></td></tr><tr><td>강의실 1회</td><td>15,000</td><td>30,000</td><td></td></tr><tr><td>노트북</td><td>1회</td><td>15,000</td><td>30,000</td><td></td></tr><tr><td>음향(추가마이크)</td><td>1회</td><td>5,000</td><td>10,000</td><td>기본 외 개당</td></tr></table> 3. 시간구분 <table><tr><th>구분</th><th>시간</th><th>비고</th></tr><tr><td>오전</td><td>09:00 ~ 12:00</td><td></td></tr><tr><td>오후</td><td>13:00 ~ 17:00</td><td></td></tr><tr><td>야간</td><td>18:00 ~ 21:00</td><td>공휴일은 운영 안함</td></tr></table> ※허가된 이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빔프로젝트	1회	15,000	30,000		조명(무빙라이트)	1회	20,000	30,000		냉·난방	강당 1회	55,000	80,000		강의실 1회	15,000	30,000		노트북	1회	15,000	30,000		음향(추가마이크)	1회	5,000	10,000	기본 외 개당	구분	시간	비고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1:00	공휴일은 운영 안함	2. 강습료 <table><tr><th>구분</th><th>기준</th><th>금액</th><th>비고</th></tr><tr><td>평생교육강좌</td><td>월/1과목</td><td>80,000원 이하</td><td>재료비 등 강습에 필요한 실비 별도</td></tr></table> 3. 부속설비 사용료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기준</th><th colspan="2">금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청소년</th><th>일반</th></tr><tr><td>빔프로젝트</td><td>1회</td><td>15,000</td><td>30,000</td><td></td></tr><tr><td>조명(무빙라이트)</td><td>1회</td><td>20,000</td><td>30,000</td><td></td></tr><tr><td rowspan="2">냉·난방</td><td>강당 1회</td><td>40,000</td><td>80,000</td><td></td></tr><tr><td>강의실 1회</td><td>15,000</td><td>30,000</td><td></td></tr><tr><td>노트북</td><td>1회</td><td>15,000</td><td>30,000</td><td></td></tr><tr><td>음향(추가마이크)</td><td>1개당</td><td>5,000</td><td>10,000</td><td></td></tr></table> ※위 1회는 제1호(시설사용료)의 각 기준에 따른 기간 내 시설을 사용하면서 부속설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시간구분 <table><tr><th>구분</th><th>시간</th><th>비고</th></tr><tr><td>오전</td><td>09:00 ~ 12:00</td><td></td></tr><tr><td>오후</td><td>13:00 ~ 17:00</td><td></td></tr><tr><td>야간</td><td>18:00 ~ 22:00</td><td>토요일은 운영 안함</td></tr></table> ※허가된 이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	구분	기준	금액	비고	평생교육강좌	월/1과목	80,000원 이하	재료비 등 강습에 필요한 실비 별도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빔프로젝트	1회	15,000	30,000		조명(무빙라이트)	1회	20,000	30,000		냉·난방	강당 1회	40,000	80,000		강의실 1회	15,000	30,000		노트북	1회	15,000	30,000		음향(추가마이크)	1개당	5,000	10,000		구분	시간	비고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토요일은 운영 안함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빔프로젝트	1회	15,000	30,000																																																																																																						
조명(무빙라이트)	1회	20,000	30,000																																																																																																						
냉·난방	강당 1회	55,000	80,000																																																																																																						
	강의실 1회	15,000	30,000																																																																																																						
노트북	1회	15,000	30,000																																																																																																						
음향(추가마이크)	1회	5,000	10,000	기본 외 개당																																																																																																					
구분	시간	비고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1:00	공휴일은 운영 안함																																																																																																							
구분	기준	금액	비고																																																																																																						
평생교육강좌	월/1과목	80,000원 이하	재료비 등 강습에 필요한 실비 별도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일반																																																																																																						
빔프로젝트	1회	15,000	30,000																																																																																																						
조명(무빙라이트)	1회	20,000	30,000																																																																																																						
냉·난방	강당 1회	40,000	80,000																																																																																																						
	강의실 1회	15,000	30,000																																																																																																						
노트북	1회	15,000	30,000																																																																																																						
음향(추가마이크)	1개당	5,000	10,000																																																																																																						
구분	시간	비고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토요일은 운영 안함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2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도동서원 등 ‘한국의 서원’ 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규약의 명칭, 목적, 협의회 자격(안 제1조 ~ 제3조)
- 임원의 구성, 임기, 임무(안 제4조 ~ 제6조)
- 협의회 사무(안 제10조)
- 수입 및 지출(안 제13조 ~ 14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Ⅱ. 검토의견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규약의 제정이유는

- 도동서원 등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3조 규약의 명칭, 목적, 협의회 자격
- 안 제4조 ~ 제6조 임원의 구성, 임기, 임무
- 안 제10조 협의회 사무
- 안 제13조 ~ 제14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동의안 1부. 끝.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①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한다.
- ② 세계유산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정한다.
- ③ 회원도시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세계유산 보유도시 간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자격) 협의회의 자격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원도시는 상호간에 신의를 지키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회의는 도시별 윤번제로 실시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제9조(개회 및 의결방법)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회의 사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결정·건의 또는 제시한다.

1. 세계유산 보유도시의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 제시
2. 회원도시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 제시
4. 회원도시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
5. 기타 본회의 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사무처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 도시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직책을 수행토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검토 요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무회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3조(수입) ① 협의회의 회비는 년 2,400,000원으로 한다.

② 회비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 하며, 회장도시에서는 당해 연도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직전 회장도시에서 집행한 잔액도 이 조항에 따른다.

③ 세계유산 관련 연구용역 등 공동경비 발생 시에는 이를 회원도시별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4조(지출) ① 협의회회 회비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2. 기타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② 회장도시 변동 시 회비 등 집행 잔액은 차기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 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회계) 협의회회 회비집행상황은 회장이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보고 하며, 회계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회장도시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경주시, 합천군, 종로구, 수원시, 고창군, 화순군, 강화군, 안동시, 경기도 광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양산시, 영주시, 보은군, 순천시, 해남군, 함양군, 장성군, 달성군, 정읍시, 논산시 22개 도시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2월 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4. 제출사유

-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 하고자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2018년 군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보고한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307개소) 및 2020년 새로이 장기미집행시설이 된 도시계획시설(1개소) 총 308개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 202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II. 검토의견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

-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며,
- 보고를 받은 군의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견을 듣고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현황

- 2020년 새로이 장기미집행이 된 시설은 연구시설(DGIST) 1개소, 2018년 보고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307개소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2,977개소 12.8km²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 그 중 집행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은 2,614개소 11.8km²로 집행율은 87.8%이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363개소 1km²이고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308개소 0.8km²입니다.
- 2020년 새로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연구시설(DGIST) 1개소로 331,725m²입니다.
- 2018년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될 때까지 해제 또는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도로 248개소 387,899m², 주차장 30개소 16,597m², 공원 19개소 19,310m², 완충녹지 10개소 55,563m²이고, 총 307개소 0.48km²입니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군 예산 소요액은 총 362개소 (로) 약 1,970억 원으로 제1단계(2021년 ~ 2023년) 사업은 149개소 약 1,254억 원, 제2단계(2024년 ~ 2026년) 사업은 213개소 약 716억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연구시설(DGIST)은 국·시비 예산으로 집행예정입니다.

○ 위와 같이,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1부
2)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1부. 끝.

붙임 1)

□ 도시계획시설 현황

가. 달성군 내 전체 도시계획시설(달성군 소관) 2,977개소 중 미집행 시설은 363개소

나. 금회 의회보고 대상인 2020년 새로이 장기미집행이 된 시설은 연구 시설(DGIST) 1개소, 2018년 보고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307개소

(2020. 12. 31.기준)

시설 구분	시설 세분	전체		집행		미집행시설						집행률 (%)
						미집행전체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합 계		2,977	12,792,658	2,614	11,752,107	363	1,040,551	55	229,457	308	811,094	87.8
도 로	소계	2,300	5,587,111	2,004	5,083,795	296	503,316	48	115,417	248	387,899	87.1
	중로	320	2,314,160	312	2,280,307	8	33,853	1	15,497	7	18,356	97.5
	소로	1,980	3,272,951	1,692	2,803,488	288	469,463	47	99,920	241	369,543	85.5
계 도	계도	1	45,663	-	-	1	45,663	1	45,663	-	-	-
주차장	노외주차장	97	173,928	66	157,118	31	16,810	1	213	30	16,597	68.0
광 장	경관광장	1	19,650	-	-	1	19,650	1	19,650	-	-	-
공 원	소계	92	219,446	70	152,936	22	66,510	3	47,200	19	19,310	76.1
	어린이공원	67	146,277	61	136,827	6	9,450	-	-	6	9,450	91.0
	소공원	22	16,961	8	6,721	14	10,240	1	380	13	9,860	36.4
	문화공원	3	56,208	1	9,388	2	46,820	2	46,820	-	-	33.3
공공공지	공공공지	88	231,116	87	229,802	1	1,314	1	1,314	-	-	98.9
녹 지	소계	189	1,795,784	179	1,740,221	10	55,563	-	-	10	55,563	94.7
	완충녹지	130	1,561,434	120	1,505,871	10	55,563	-	-	10	55,563	92.3
	경관녹지	49	143,570	49	143,570	-	-	-	-	-	-	100.0
	연결녹지	10	90,780	10	90,780	-	-	-	-	-	-	100.0
연구시설	연구시설	5	1,440,595	4	1,108,870	1	331,725	-	-	1	331,725	80.0
기타시설	기타시설	204	3,279,365	204	3,279,365	-	-	-	-	-	-	1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 12. 31.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계		308	811,094	
	도 로	합 계	248	387,899	
		중 로	7	18,356	
		소 로	241	369,543	
	주 차 장	노외주차장	30	16,597	
	공 원	합 계	19	19,310	
		어린이공원	6	9,450	
		소공원	13	9,860	
	녹 지	완충녹지	10	55,563	
	연구시설	연구시설	1	331,725	DGIST

○ 2020년 새로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 12. 31.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계		1	331,725	
	연구시설	연구시설	1	331,725	DGIST

○ 2018년 보고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될 때까지 해제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2020. 12. 31.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2018년 보고한 시설 중 2년이 지난 시설	총 계		307	479,369	
	도 로	합 계	248	387,899	
		중 로	7	18,356	
		소 로	241	369,543	
	주차장	노외주차장	30	16,597	
	공 원	합 계	19	19,310	
		어린이공원	6	9,450	
		소공원	13	9,860	
	녹 지	완충녹지	10	55,563	

□ 202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363개소(군비 362, 국·시비 1)

※ 연구시설(DGIST)은 국·시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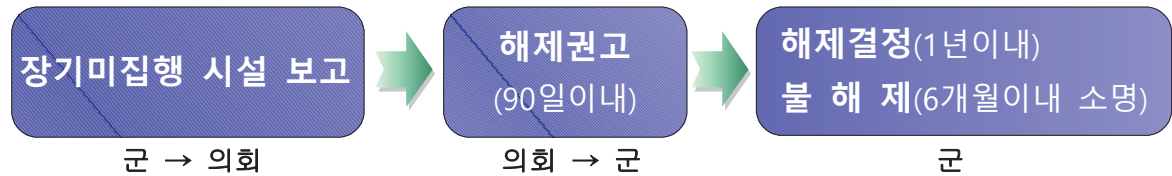
(단위 : 천㎡, 억 원)

구분	시설 구분	합 계			2021년~2023년 (1단계)			2024년~2026년이후 (2단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363	1,040	5,732	150	431	1,659	213(1)	609	4,073
군비	소 계	362	715	1,970	149	396	1,254	213	312	716
	도 로	296	503	1,171	123	261	584	173	242	587
	궤 도	1	46	310	1	46	310	—	—	—
	주 차 장	31	17	54	—	—	—	31	17	54
	경관광장	1	20	196	1	20	196	—	—	—
	공 원	22	66	137	13	13	62	9	53	75
	공공공지	1	1	26	1	1	26	—	—	—
	녹 지	10	55	76	10	55	76	—	—	—
국·시·비	연구시설	1	332	3,762	1	35	405	(1)	297	3,357

참고 1

의회보고 절차 및 해제 권고 시 고려사항

○ 의회보고 및 처리절차



○ 해제 권고 시 고려사항

-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도시개발계획, 환경 등)
-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참고 2

상위 및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

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